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일시 : '19. 3. 20.(수), 14:00~16:00

장소 :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18년 실시했던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후속조치 이행) 발표 후 이행방법에 대한 각급 기관 문의가 많아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3. 20.(수), 14:00~16:00 /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참석대상 :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시책평가 업무담당자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271개 기관 중심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제도보완 대책 설명, 관련 지표 안내, 제도개선 의견청취 등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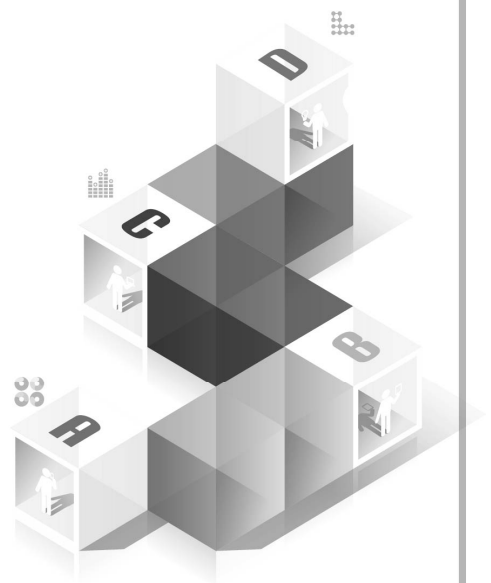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청탁금지제도과
14:05~14:25	20'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분석 결과	"
14:25~14:55	30'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설명 및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제도보완 대책 설명	"
14:55~15:20	25'	후속조치 이행 관련 시책평가 지표 안내	"
15:20~16:00	40'	질의응답, 의견청취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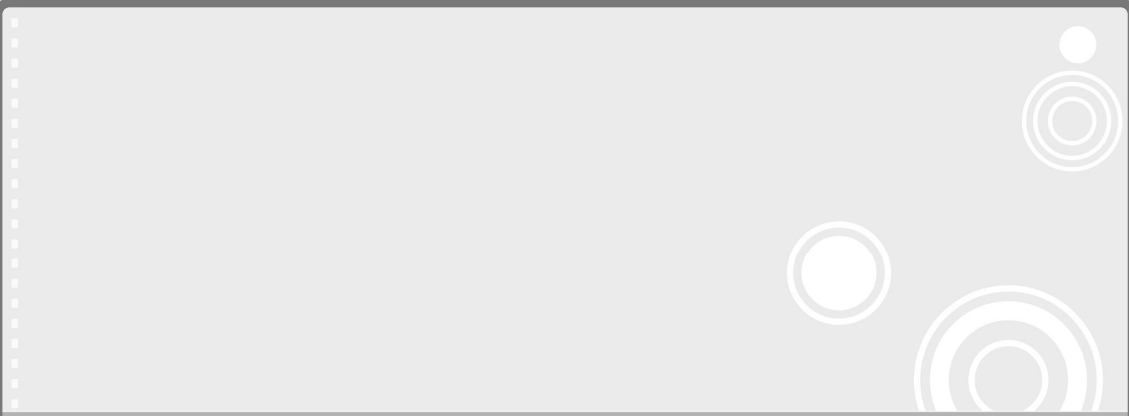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Contents

- ◆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설명 내용 1
- ◆ [붙임 1]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 23
- ◆ [붙임 2]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수정안) 33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설명 내용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2019. 3. 20.



국민권익위원회



I.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분석 결과

목적 및 개요

☑ 목적

- 권익위로 접수된 법 위반 신고 사건 분석을 통해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운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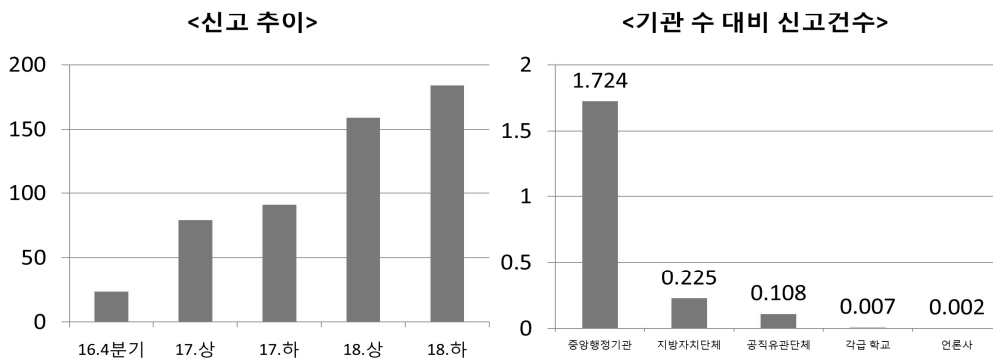
☑ 개요

- (대상) '16.9.28.~'12.31.까지 접수된 신고사건 536건
- (근거) 청탁금지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신고접수 추이

☑ 신고접수 추이

- '16년 4분기 23건, '17년 170건, '18년 343건으로 증가 추세
- 기관 유형별 : 각급 학교 158건, 공직유관단체 123건, 지방자치단체 113건, 중앙행정기관 100건, 언론사 42건



신고 유형별 분석 | 현황

☑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 금품등 수수 409건(76.3%), 부정청탁 118건(22%), 외부강의 미신고 9건(1.7%)

	부정청탁					금품등수수					외부 강의	합계
	감사,수사	입학성적	사적이용	기타	계	금전	물품	접대,향응	기타	계		
중앙행정기관	14	-	8	10	32	20	13	20	15	68	-	100
지방자치단체	3	1	7	15	26	24	23	21	17	85	2	113
공직유관단체	4	-	3	22	29	30	29	24	6	89	5	123
각급 학교	1	20	2	6	29	58	52	12	5	127	2	158
언론사	1	-	-	1	2	13	5	7	15	40	-	42
합계	23	21	20	54	118	145	122	84	58	409	9	536

신고 유형별 분석 | 사례

☑ 부정청탁

- 도의회 교육위원이 유치원 운영비 횡령 관련 감사를 받고 있던 유치원장의 청탁을 받고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무마를 청탁
- 장학사는 자녀의 입학 을 위해 해당 학교 교사에게 자신의 직위를 밝히며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특례입학과 관련해 잘 보고해줄 것을 휴대폰 문자로 부탁하는 등 청탁
- 교육감이 도내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교직원 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청탁

신고 유형별 분석 | 사례

☑ 금품등 수수

- ○○시 재건축조합신축공사 총괄감리원이 현장대리인실에서 시공사인 △△건설 현장대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240만원을 수수한 의혹
- ○○군 면장 및 총무담당이 면민의 날 문화체육행사에 제공할 두부 100상자를 관내 두부생산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원받은 경우
- ○○ 지방고용노동청 △△ 과 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직원들이 점검 및 평가대상 사업자 직원 6명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고 음식 및 주류 64만8천원을 사업자측 법인카드로 제공받은 경우

신고 유형별 분석 | 사례

☑ 금품등 수수

- ○○시 재건축조합신축공사 총괄감리원이 현장대리인실에서 시공사인 △△건설 현장대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240만원을 수수한 의혹
- ○○군 면장 및 총무담당이 면민의 날 문화체육행사에 제공할 두부 100상자를 관내 두부생산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원받은 경우
- ○○ 지방고용노동청 △△ 과 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직원들이 점검 및 평가대상 사업자 직원 6명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고 음식 및 주류 64만8천원을 사업자측 법인카드로 제공받은 경우

신고사건 처리 현황 | 현황

☑ 처리 현황

- 수사·감독기관이첩·송부 174건(35.6%), 종결 315건(64.4%)

	위원회 처리 결과				진행중	합계
	이첩	송부	종결	계		
부정청탁	11(10.7%)	18(17.6%)	73(71.5%)	102	16	118
금품등 수수	97(25.6%)	42(11.1%)	239(63.2%)	378	31	409
외부강의	3(33.3%)	3(33.3%)	5(33.3%)	9	-	9
합계	111(22.7%)	63(12.9%)	315(64.4%)	489	47	536

신고사건 처리 현황 | 기소된 사례

☑ 부정청탁

- 중학교 행정실장이 교구업체 청탁에 의해 허위 비교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물품선정
- 대학교 총장이 취업지원관 등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회의 청탁을 받고 담당 팀장에 지시하여 내정자 2명 선발

☑ 금품등 수수

- 마라톤대회 주최측의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 대학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 지자체 발주 시공사의 금품 제공(감리의 자진신고) 등

Ⅱ.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제도보완 대책

점검 개요

추진 배경

- 해외출장 지원 실태 관련 국민적 관심 증대
※ 해외출장 등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 : 26만여명('18년5월)

기간·대상

- '18년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점검 실시
- 1,483개 공공기관의 '16년9월28일~'18년4월30일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사항

- 피감기관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
- 공직자가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결과 발표·후속조치

- 서면조사 중심 점검 결과 및 제도보완 대책 발표(7.26.)
- 기관별 추가 조사, 제도보완 등 후속조치 이행(7.26.~12월)
-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발표(12.31.)

관련 규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규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사항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2.24. 시행)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원칙)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의 원칙적 금지

*(예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

* 지방의원이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원받아 하는 국내외활동 제한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보도 자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 2018. 7. 26.(목) · 총 8쪽

· 2018. 7. 26.(목),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사라진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발표-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⑤ 해외출장 사전·사후 공개 확대 추진 등 관리체계 구축

-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있는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19년 평가 시)하도록 하여, 해외출장 부당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국무회의 부처보고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2018. 8. 28.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 (평가반영) 공기업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실질적 이행 견인

- 제도보완 대책의 주요내용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이행을 확보

< 평가 내용(예시) >

-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 공개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
-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 등

-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전 공공기관의 이행 확보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보다나은 권익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보도자료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 7073, 7078

(F) 044-200-7911

· 2018. 12. 31.(월) · 총 19쪽(붙임 12쪽 포함)

·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 -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Ⅲ

향후 추진 사항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권익위, '19.3월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보완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

※ 시책평가 대상기관('18년 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소속·산하기관은 감독기관이 실시

○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련 등 일체의 부정청탁 사실 확인 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적극 독려

※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① 외부 지원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기관의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②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 제한

③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 예산낭비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④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

각급 기관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 ⑤ 출장자 본인이나 소속 부서 직원, 상급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외
- ⑥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필요시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 확보
- ⑦ 기관별 홈페이지에 식별 및 접근이 용이한 메뉴를 만들어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공개

**소속기관의 예산이 아닌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에 한정**

예시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예시 | 서면심사 제한, 세부심사 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예시 | 외부 심사위원·감사관 참여 의무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의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예시 | 계약에 포함된 출장 제한,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4조(출장의 금지)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 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수익자부담 해외출장 경비지원 법령·기준 정비

(취지)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에 따라 조사·검사·검수·검역 등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항공권, 숙박권 등의 실물 포함)를 부담하는 경우(수익자부담 해외출장) 지원 절차·범위 명확화

- (내용) ① 지원받는 소속기관 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② 소속기관을 통한 수수
③ 직접 업무 수행 직원 외에 간부 직원 등 동행 금지

예시 | 지원받는 소속기관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소속기관을 통한 수수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여비규정

- 제18조의1 ②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우리 회사「여비규정」에 정한 범위 내로 하며, 「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 조달청 공무국외여행규정

- 제12조 ④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하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출장대상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등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한다.

예시 | 직접 업무 수행 직원 외에 간부 직원 등 동행 금지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 제12조 ② 해외출장 대상자는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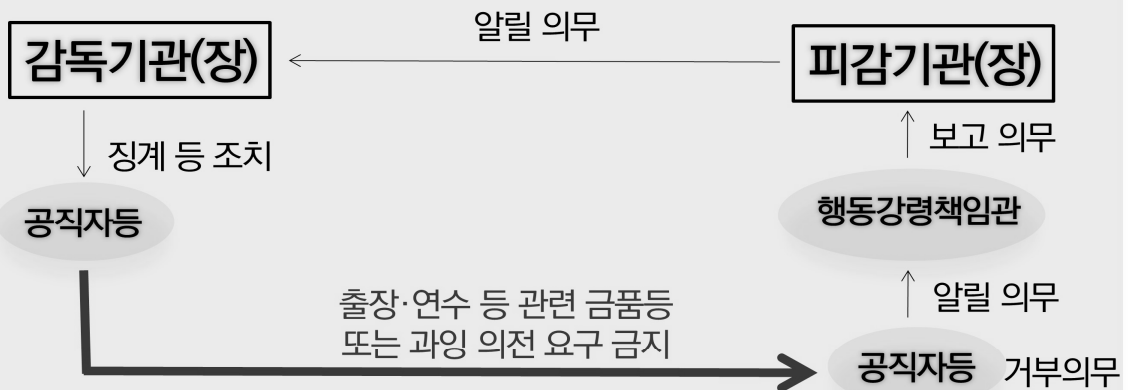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비지급지침

- 제8조 ③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장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은 동행할 수 없다.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금지 및 거절근거 등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2.24. 시행)을 통하여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해외출장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신설

→ 각급기관은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에 해당 내용 반영 필요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Ⅲ. 시책평가 지표 안내

지표(수정안)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각급 기관 및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관련 제도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 평가

-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가 '18.12월 고시한 공직유관단체(1,156개) 중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대상기관은 과제의 이행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이행노력도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관련 공공기관 해외출장 제도 보완사항 8개

지표(수정안)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세부 평가기준

• 평가 대상기관 이행여부(40점)

이행여부	배점	
	상반기이행	하반기이행
8개 과제 이행	40	20
7개 과제 이행	15	10
6개 과제 이행	5	0
5개 이하과제이행	0	0

지표(수정안)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세부 평가기준

•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노력도(감점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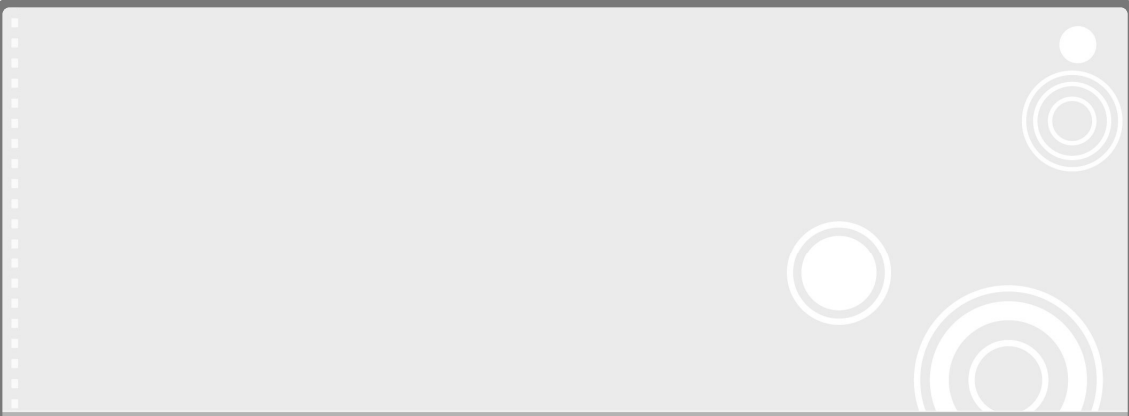
이행률	배점
비평가산하기관의이행여부를기관 자체 평가에 반영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 10
비평가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¹⁾ 3회 이상 실시	
비평가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90% 이상 ²⁾	

- 1)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한 경우 인정
- 2) 산하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률*은 상·하반기 구분없이 평가기간(~'19.10월) 동안 제도보완 건수 대비 이행 건수의 비율로 평가
- 이행률 = 산하기관 제도보완 이행 건수 / 산하기관 제도보완 건수 × 100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붙임 1]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 추진 경과

-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에 대한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증대

※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청원 : 26만여명('18.4.16.~5.16.)

- 범정부점검단 구성 및 실태점검 실시(5.1.~6.30.)

▪ 점검단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총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대상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18.4.30.(약 19개월)
▪ 대상 기관	총 1,483개 공공기관
▪ 점검 사항	①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 ② 공직자가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발표(7.26.)

※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기준 일제 정비,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 등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포함

- 감독·소속기관에 점검결과 통보,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확고한 후속조치 이행 당부(7.27.)

※ 감독기관은 부당지원 소지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위반사항 확인 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 조치 요청

- 각급기관별 추가 조사, 제도보완 등 후속조치 이행(7.27.~12월)

- 실태점검 후속조치 추진 계획 국무회의 보고(8.28.)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과잉의전 요구는 금지 및 문책되어야 하는 행위
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근본적 개선 필요

- 후속조치 이행상황 취합·분석 및 이행결과 발표(~'18.12.31.)

□ 외부 지원 해외출장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사항

- ① 외부 지원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기관의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②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 제한
- ③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 예산낭비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 ④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
- ⑤ 출장자 본인이나 소속 부서 직원, 상급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외
- ⑥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필요시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 확보
- ⑦ 기관별 홈페이지에 식별 및 접근이 용이한 메뉴를 만들어 출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공개



소속기관의 예산이 아닌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에 한정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 서면심사 제한(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부심사기준 마련(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외(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 계약에 포함된 출장 제한(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4조(출장의 금지)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 외 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 내용('18.12.31.) >

-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보완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

※ 시책평가 대상기관('18년 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소속·산하기관은 감독기관이 실시

□ 수익자부담 해외출장 경비지원 법령·기준 정비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에 따라 조사·검사·검수·검역 등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항공권, 숙박권 등의 실물 포함)를 부담하는 경우(수익자부담 해외출장) 지원 절차·범위 명확화

○ 지원받는 소속기관 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예시)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여비규정 >

제18조의1 ②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우리 회사 「여비규정」에 정한 범위 내로 하며, 「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 직접 업무 수행 직원 외에 간부 직원 등 동행 금지(예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

제12조 ② 해외출장 대상자는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비지급지침 >

제8조 ③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장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은 동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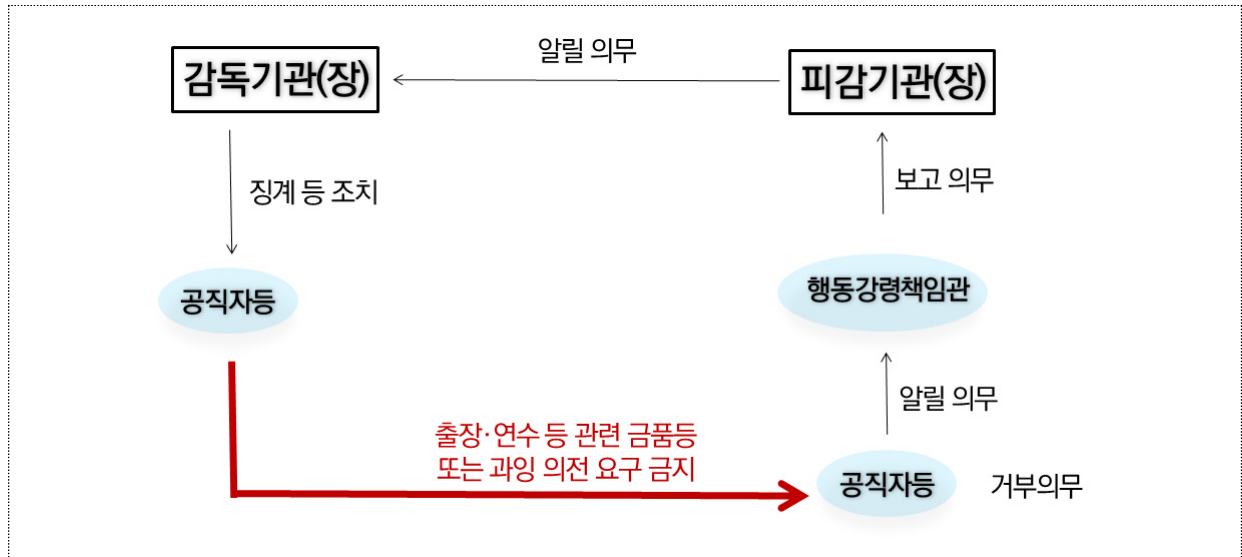
○ 소속기관을 통한 수수(예시)

< 조달청 공무국외여행규정 >

제12조 ④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하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출장대상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등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한다.

□ 부절절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금지 및 거절근거 등 마련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2.24. 시행)을 통하여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해외출장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신설



※ 각급기관은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에 해당 내용 반영 필요

< 참고 : 공무원 행동강령 >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2018.12.19.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등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장의 금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 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55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수정안)**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안)

평가부문	평가영역(가중치)	단위과제(가중치)	평가지표
A. 계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70)	①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실적 ③ 청렴사회협약 이행
	1. 청렴생태계 조성(0.3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30)	①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②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가점]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 [가점]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B. 실행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가점]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0.3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②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③ 부패·공익신고 등 이첩사건 사후관리 [가점]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①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②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가점] 법국가 자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C. 성과·확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0.3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②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 [가점]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1.00)	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D. 감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1.00)	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1.00)	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미실시 ②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관련 업무처리 충실도 ③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④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각급 기관 및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관련 제도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 평가																			
	*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가 '18.12월 고시한 공직유관단체(1,156개) 중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대상기관은 과제의 이행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이행노력도에 따라 평가																			
	*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관련 공공기관 해외출장 제도 보완사항(평가대상 과제)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서면심사 제한 · 이해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세부심사기준 마련 ·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 ·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 구체적 제도보완 내용은 '18. 7. 26.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참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 대상기관 이행여부(40점)																			
	<table><tr><th rowspan="2">이행여부</th><th colspan="2">배점</th></tr><tr><th>상반기 이행</th><th>하반기 이행</th></tr><tr><td>8개 과제 이행</td><td>40</td><td>20</td></tr><tr><td>7개 과제 이행</td><td>15</td><td>10</td></tr><tr><td>6개 과제 이행</td><td>5</td><td>0</td></tr><tr><td>5개 이하 과제 이행</td><td>0</td><td>0</td></tr></table>				이행여부	배점		상반기 이행	하반기 이행	8개 과제 이행	40	20	7개 과제 이행	15	10	6개 과제 이행	5	0	5개 이하 과제 이행	0
이행여부	배점																			
	상반기 이행	하반기 이행																		
8개 과제 이행	40	20																		
7개 과제 이행	15	10																		
6개 과제 이행	5	0																		
5개 이하 과제 이행	0	0																		
-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노력도(감점 10점)																				
<table><tr><th>이행률</th><th>배점</th></tr><tr><td>비평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기관 자체평가에 반영</td><td rowspan="3">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 10</td></tr><tr><td>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¹⁾ 3회 이상 실시</td></tr><tr><td>비평가 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90% 이상²⁾</td></tr></table>				이행률	배점	비평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기관 자체평가에 반영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 10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¹⁾ 3회 이상 실시	비평가 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90% 이상 ²⁾											
이행률	배점																			
비평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기관 자체평가에 반영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 10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¹⁾ 3회 이상 실시																				
비평가 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90% 이상 ²⁾																				
1)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한 경우 인정																				
2) 산하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률*은 상·하반기 구분없이 평가기간(~'19.10월) 동안 제도보완 건수 대비 이행 건수의 비율로 평가																				
* 이행률 = $\frac{\text{산하기관 제도보완 이행 건수}}{\text{산하기관 제도보완 건수}} \times 100$																				
※ (예시) 권익위의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이 10개 있는 경우 제도보완 건수(모수) = 산하기관 수(10개) × 제도보완 건수(8건) = 80건 80건 중 72건(90%) 이상 완료시 감점없음																				
비고																				